



노동부
Ministry of Labor

보 도 자 료

- ▶ 2009. 6. 16 배포
- ▶ 총 3쪽(붙임 포함)

-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마성균 과 장
송유나 사무관
- ▶ 전화 : 6902-8473
- ▶ 팩스 : 503-6267
- ▶ 메일 : youna@molab.go.kr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2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3000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MOU 체결 -

-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향후 20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인증하고 3,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6일(화) 오전 10시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노리단'(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MOU를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가사간병, 도시락 지원, 재활용 사업 등의 분야에 쏠려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들어 문화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현재 244개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가운데 문화 관련 분야는 12곳에 불과해,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 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MOU 협약서 1부

【붙임1】



업무협력 협약서(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의 확대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이하 “양 부처”라고 한다)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부처의 협력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이 가능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포괄한다.

제3조(협력의 기본원칙) 양 부처는 활발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한다.

제4조(협력할 사항) 양 부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에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

3. 문화·체육·관광 분야 법인·단체의 사회적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소외 계층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제5조(실무협의회) ① 양 부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민간 전문가 등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는 양 부처에서 합의하여 정하되 안전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관 및 관련 부서 과장
2. 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관련 부서 과장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시 양 부처가 합의하여 수시 개최한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09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노동부장관
